



일본의 공증인법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법무과

I. 개요

일본에서는 1886년에 프랑스의 제도를 참고로 해서 「공증인규칙」이 제정되어, 3년 후인 1889년에 공증인에 대한 제1회의 임명이 행하여져서 123명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할 수는 있어도, 인증권한은 존재하지 않았다. 1908년에는 독일식으로 바뀐 「공증인법」이 제정되었다.

공증에 관한 기본법으로서는 공증인법이 있

고, 공증인법시행규칙, 공증인수수료령 등의 관련법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¹⁾ 법무성이 공증업무 처리에 관하여 발한 각종 지시나 질의에 대한 회신 등이 선례로서, 각 공증법규의 해석과 규정이 흠결된 사항의 보충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공증인법은 공증인의 제도를 정한 법률이다. 공증인의 사명, 직무, 일본 공증인연합회의 제도 등을 규정한 것 이외에, 무자격자의 공정증서작성사무, 정관, 사서증서(사문서)인증사무를 다루는 표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1) 法務省の所管する法令の規定に基づく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規則, 不動産登記法, 検察官・公証人特別任用等審査会令,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指定公証人の行う電磁的記録に関する事務に関する省令, 法務省組織令,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第三条の規定による証書の様式に関する省令, 金融庁設置法, 日本銀行法, 民事訴訟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公証人手数料令, 国会等の移転に関する法律, 消費税法, 公証人法第十三条ノ二の審議会等を定める政令, 国土利用計画法,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航空・鉄道事故調査委員会設置法, 公害等調整委員会設置法, 沖縄の復帰に伴う法務省関係法令の適用の特別措置等に関する政令, 沖縄の復帰に伴う国家公務員等の懲戒免除に関する政令, 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公害紛争処理法, 地価公示法, 都市計画法, 印紙税法, 国税徴収法, 労働保険審査官及び労働保険審査会法, 地方教育行政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 原子力委員会及び原子力安全委員会設置法, 警察法, 日本中央競馬会法, 社会保険審査官及び社会保険審査会法, エネスコ活動に関する法律, 公安審査委員会設置法, 土地収用法, 公職選挙法, 建築基準法, 地方税法, 地方公務員法, 建設業法, 人権擁護委員法, 犯罪者予防更生法, 労働組合法, 公証人身元保証金令, 公証人法施行規則, 公証人定員規則, 競馬法, 昭和二十二年法律第五十四号(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国家公務員法, 金融機関経理応急措置法, 会社経理応急措置法施行令, 公証人法, 非訟事件手続法 등.

II. 공증인의 권한과 의무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①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②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③ 회사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이하 전자적 방식)에 의해 작성된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에 인증하는 사무를 행할 권한을 갖는다(제1조). 그러나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촉탁을 거절할 수 없고(촉탁인수의무 제3조), 사건의 누설금지의무가 있다(제4조).²⁾ 또한 공증인은 다른 공직을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하거나 상사회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될 수 없다(겸직금지 제5조). 그리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서류, 기타 법령에 의해 공증인이 조제한 장부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무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持出) 못한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서류의 지출금지 제25조 제1항).



2)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III. 임면

1. 임명권자

공증인은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에 속하며, 임명권자는 법무대신이 임명한다(제10조, 제11조). 소속의 지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집행의 구역이 정하여지고(제17조), 또한 공증인의 감독 사무분장자가 정하여진다(제74조 제2항). 그 밖에 소속의 지정은 신원보증금납부(제19조 제1항), 직인의 인영, 성명의 自署의 제출(제21조 제1항), 書記의 채용(제24조 제1항) 등에 대하여 공증인과 그 소속하는 법무국장, 지방법무국장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다만,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는 법무국, 지방법무국 또는 그 지국에 근무하는 법무사무관이 관할구역 내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대행한다(제8조). 이러한 대행에 의한 법무사무관의 직무수행에는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수수료, 일당과 여비는 공증인의 수입으로 하지 않고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제7조).

그리고 공증인법 및 법령에 의하여 공증인이 행하는 전자적 기록에 관한 사무는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공증인이 취급한다(제7조의 2)

2. 임명자격

공증인은 일본국민인 성년자로서 법무대신이



정하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 이상 공
 증인견습으로 실지수행을 수행한 사람이여야 한
 다(제12조 제1항). 이 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은 법무대신이 정하게 되어있다(제12조 제2
 항)³⁾. 다만 재판관(간이재판소의 판사는 제외),
 검찰관(부검사는 제외)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
 진 사람은 시험 및 실지수행을 거치지 않고서 공
 증인에 임명될 수 있다(무시험자격자 제13조).
 또한 여러해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하여 무시험
 자격자에 준하는 학식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정
 령에 정하는 심의회 등의⁴⁾ 선고를 거친 사람은
 시험 및 실지수행을 거치지 않고서 공증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選考任用 제13조의 2).

3. 결격 및 면직 · 실직사유

(1) 결격사유

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사람. 단, 2년 이
 하의 금고에 처해진 사람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②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된 사
 람, ③ 파면의 재판을 받은 자, 징계처분으로 인
 해 免官이나 면직된 자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제

명된 자로서 파면, 면관, 면직 또는 제명 후 2년
 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공증인으로 임명될 수 없
 다(제14조).

(2) 면직 · 실직사유

법무대신은 ① 공증인이 면직을 원하는 경우,
 ② 공증인이 신원보증금 또는 그 보충금액을 소
 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공증인의
 연령이 70세에 달하는 경우, ④ 공증인이 신체
 또는 정신쇠약으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공증인을 면직시킬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15조).

앞의 결격사유 중 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사람, ②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된 사
 람은 당연히 공증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실직)
 한다(제16조).

IV.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제17조).



3) 본 항은 실제로는 사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조문상으로는 시험에 합격하여 6개월 이상 공증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원칙적으로 임명자격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임명되어 있는 공증인은 오로지 범조유자격 공증인(제13조) 및 選考에 의한 특임공증
 인(제13조의2)의 경우 뿐이다.

4) 위 규정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심의회 등은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를 보면 국가행
 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법률 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심사, 불복심사
 그 밖의 학식경험을 가지는 사람 등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공증인은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제18조).

공증인이 현실적으로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① 공증인으로 임명될 것(제11조), ② 소속 법무국 등이 지정될 것(제11조), ③ 역장을 설치하는 곳이 지정될 것(제18조), ④ 역장을 설치할 것. 사전에 법무국장 등의 인가를 받고, 사후에 법무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8조), ⑤ 신원보증금을 납부할 것(제19조), ⑥ 봉인 및 서명을 법무국장 등에게 제출할 것(제21조), ⑦ 서기를 둔 때에는 법무국장 등의 인가를 받을 것(제24조), ⑧ 공증인회의 회원이 될 것(당연회원, 공증인법시행규칙 제44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공증인은 ①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또는 동거하는 친족일 때 및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 ②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좌인인 경우, ③ 촉탁받은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때, ④ 촉탁받은 사항에 대해 대리인이나 보좌인일 때 또는 대리인이나 보좌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제22조).

V. 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일본어로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촉탁인의 성명을 알고 그에 따른 면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을 모르거나 그

와 면식이 없을 때에는 관공서가 작성한 인감증명서의 제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의해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증명시켜야 한다(제28조).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을 받아 공증인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권한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권한을 증명시킬 것을 요한다(제32조 제1항). 또한 제3자의 허가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에 대해 공증인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가나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시키거나 그 허가 또는 동의를 증명시킬 것을 요한다(제33조).

다만,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제26조).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함에는 그 청취한 진술, 목격할 상황, 기타 스스로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녹취하고 또한 그 실험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5조). 이 이외에도 ① 증서의 번호, ② 촉탁인의 주소, 직업, 성명 및 연령, 법인일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③ 대리인에 의해 촉탁받을 때에는 그 취지와 그 대리인의 주소, 직업, 성명과 연령, ④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을 알고 면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 ⑤ 제3자의 허가 또는 동의를 있을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와 그 제3자의 주소, 직업, 성명과 연령, 법인일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⑥ 인감증명서의 제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의해 틀림없음을 증명하고 또한 인감이나 서명에 관한 증명서



를 제출시켜 증서의 진정함을 증명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⑦ 제32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⑧ 급박한 경우에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증명시킨 때에는 그 취지, ⑨ 통역인 또는 입회인을 입회시킬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와 그 통역인 또는 입회인의 주소, 직업, 성명과 연령, ⑩ 작성 연월일과 장소 등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제36조).

VI. 인증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면전에서 서명 혹은 날인할 때, 또는 증서의 서명이나 날인을 자인할 때 그 사실의 기재를 행한다. 그리고 사서증서의 부분에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한다.

사서증서에 문자의 삽입, 소제, 개서, 난외기재, 기타의 정정이 있거나 파손이나 외견상 현저히 의심할 만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8조).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면전에서 증서를 기재해서 기재의 진실을 선언한 후에 증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을 자인하는 취지의 기재를 행하는 것을 요한다(제58조의 2).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證簿番號), 인증의 연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공증인과 입회인이 서명날인하고 공증인은 그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와의 사이에 날인하여야 한다(제59조).

VII. 전자공증

1. 관련법규

공증인법 제1조 4호에서 전자적 기록에 인증하는 것을 공증인의 권한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자공증의 근거를 만들었다. 그 외에도 제7조의 2(전자적 기록에 관한 사무), 제62조의 6(전자적 기록의 인증방법), 제62조의 7(인증전자적 기록에 의한 정보의 보존, 증명 등), 제62조의 8(전자적 기록에 인증을 하는 경우의 조치) 등을 신설하여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증인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지정공증인이 행하는 전자적 기록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는 법무성령으로 정한다(제7조의 2 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2. 전자서명

공증인법 제62조의 6 제1항 제1호는 ‘촉탁에 관련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가 자신이 작성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치로서 당해 정보가 다른 정보로 개변되었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작성자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2조의 8 제1항 제1호는 전자적 기록에 인증 등을 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가 그 지정공증인의 작성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치로서 당해 정보 기타의 정보로 개변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작성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서명을 의미한다(성령 제2조).

3. 전자적 기록의 보존과 정보의 동일성 증명

전자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으로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문서를 변환하여 해시함수⁵⁾의 형태로 보관하는 방법과 문서 그 형태로 보관하는 방법이다.

첫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를 인증하고, 또한 확정일자가 붙어 있는 정보를 붙인 시점에서 전자적 기록으로 기록된 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보존한다(제62조의 7 제1항). 그 이후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적 기록의 취지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한 자는 자기가 보유하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와 이미 촉탁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 또는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62조의 7 제3항 제1호).

둘째, 인증을 받거나 일자정보가 붙은 동일 내용의 정보를 보존하는 방식이다(제62조의 7).

4. 동일한 정보의 제공

(1) 촉탁인 등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공증인법 제62조의 7 제3항 제2호는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적 기록의 취지에 대하여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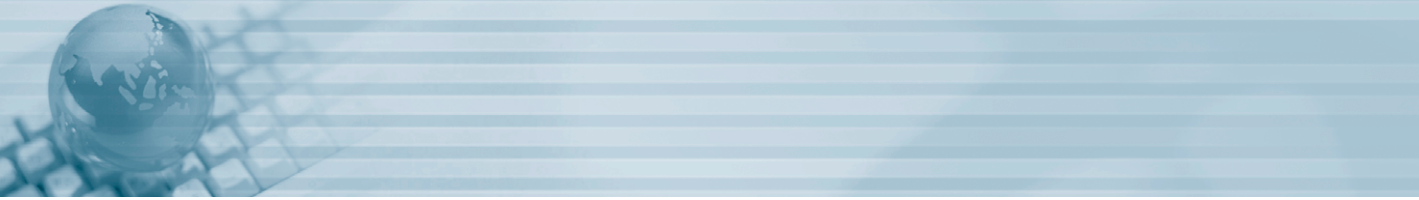
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한 자는 인증을 받아 보존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촉탁인 등은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공증인에 대하여 등부관리번호 기타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촉탁인 등은 디스크를 지정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① 동일성에 관한 표시 ② 년월일 ③ 지정공증인명 ④ 등부관리번호를 기록한 후 촉탁인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성령 제17조).

(2) 서면에 의하는 경우

공증인법 제62조의 7 제4항은 촉탁인 등이 동일한 내용의 전자적 기록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정공증인이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정공증인이 서면의 교부에 의한 정보의 제공을 행하는 경우에는 청구에 관련된 정보에 ① 동일성에 관한 표시, ② 년월일, ③ 지정공증인명, ④ 등부관리번호를 첨부하고 이것을 출력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해 서면에 지정공증인이 날인하여 촉탁인 등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서면이 복수인인 경우에는 지정공증인은 각 장의 끝부분에 직인(契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성령 제19조 제1항).



5) 컴퓨터 암호화 기술의 일종으로 요약함수(要約函數)·메시지다이제스트함수(message digest function)라고도 하는데 주어진 원문(原文)에서 고정된 길이의 의사난수(처음에 주어지는 초깃값을 이용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는 메커니즘(의사 난수 생성기)에 의해 생성되는 수)를 생성하는 연산기법이며 생성된 값은 '해시값'이라고 한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참조.



(3) 전기통신회선의 경우

촉탁인 등이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을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정공증인에게 당해 청구에 관련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촉탁인은 당해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행하고 또한 이에 촉탁인의 전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성령 제18조 제1항). 이 경우에 당해 청구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청구에 관련정보의 등부관리번호를 의미한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청구에 관련된 정보에 ① 동일성에 관한 표시, ② 년월일, ③ 지정공증인명, ④ 등부관리번호를 기재한 정보를 첨부하고, 전기통신회선으로 촉탁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성령 제18조 제3항).

박 광 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